

수원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744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7443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321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1880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1002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심유진

변론종결 2022. 5. 19.

판결선고 2022. 6. 2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100252 판결

환송전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1880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3213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표 바로 윗 행의 “(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아래 특약사항 제1항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하1행부터 제5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와 B는 이 사건 특약으로 2억 6,400만 원의 계약금 지급채무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억 4,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되, 동액 상당의 계약금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하고, 채권자측 입장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계약 당일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 제1심판결 제5면 8행부터 제6면 하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특약으로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계약금 중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약정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곧바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특약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특약만으로 곧바로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② 매수인으로서 통상의 거래관행상 계약의 성립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B가 이 사건 특약만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장래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약속받고 이 사건 채권을 미리 포기할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특약만으로 이 사건 채무가 소멸한 것이라면 계약금 중 이 사건 채무를 제외한 2,400만 원에 대하여만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작성수수될 이유가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4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하8행부터 제8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판결 선고일인 2021. 12. 16.까지는 1)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제1심에서 취하한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한 감정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의 일부가 취하된 경우 그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되어 취하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의 상환은 별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하므로(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등 참조),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박광서, 판사 차지원

1) 피고의 주장이 환송전 당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등 참조).